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윤영석·박덕흠·조경태

서일준 • 구자근 • 최형두

이종배 · 김태호 · 김종양

박형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 1.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 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2.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밖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4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9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95)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8억9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5)
3천억원 초과	312억9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
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
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1천800만원 + (2억원을
200억원 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하	19)
200억원 초	37억8천만원 + (200억원
과 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이하	분의 21)
3천억원 초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과	분의 24)

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 정 안

제55조(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이 있으면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1천800만원 + (2억원을
200억원 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하	19)
200억원 초	37억8천만원 + (200억원
과 3천억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이하	분의 21)
0=10101 =	625억8천만원 + (3천억원
3천억원 초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
과	분의 24)

2.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밖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45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9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 분의 95)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18억9천만원 +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5)
3천억원 초과	312억9천만원 + (3천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의 100분의 1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